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 등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의무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법 체계를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8조의2 및 제15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현대화(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대화”를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대화(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포함한다)”를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u>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 등의 <u>현대화(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u>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①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u> ----- ----- ----- ----- ----- <u>자</u> <u>동화·기계화 및 지능화</u> ----- ----- -----.
	②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u>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 등을 <u>현대화</u> 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 ----- ----- ----- <u>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u> ----- ----- -----

		-----.
	③ 제2항에 따른	③ -----
	지원 대상·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	-----
	필요한 사항은 농	-----대통령령
	림축산식품부령으	령령-----.
	로 정한다.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다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및	-----
	시설 현대화(자동화	----자동화·기계화
	·기계화 및 지능화	및 지능화-----
	를 포함한다) 등-----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90
----------	------

발의연월일 : 2024. 11. 6.

발 의 자 : 서천호 · 정성국 · 백종현
임종득 · 김예지 · 우재준
정희용 · 김선교 · 이만희
서지영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스마트 제조강국 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한데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을 받은 44개 식품제조기업 가운데 식품의 제조·가공·조리·포장 등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정보화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전무하고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기업도 10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제8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 등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의무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법 체계를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8조의2 및 제15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
의 연구·개발·보급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
조 시설 등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 등을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하려는 식
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을 “및 시설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 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 ----- ----- ----- -----.
1. · 2. (생 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u>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 동화 · 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 한 기술의 연구 · 개발 · 보급</u>
3. ~ 6. (생 략) ② (생 략) <신 설>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① <u>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산업에 필 요한 생산 · 제조 시설 등의 자 동화 · 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 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u> ②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식품 산업에 필요한 생산 · 제조 시</u>

	<u>설 등을 자동화·기계화 및 지 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 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u>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 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 무·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 시할 수 있다.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 ----- ----- <u>및 시설 자동화·기계화</u> <u>및 지능화 등</u> ----- ----- -----.
1. ~ 4. (생 략) ②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